

##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「양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「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.

2025년 11월 25일

양 산 시 의 회 의 장

1. 청구 취지 : 「양산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정
2. 청구인의 대표자 : 박재우(경남 양산시 동면)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: 2025. 11. 25. (화)

#### 4. 청구 이유

○ 지역 내 소비 위축,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가계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

5. 서명요청 기간 : 2025. 11. 25.(화) ~ 2026. 2. 25.(수)

#### 6. 정보시스템 서명(서명취소)방법

○ 인터넷 검색창에 “주민e직접”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주소에 접속(<https://www.juminegov.go.kr/>)하여 본인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#### 7. 문의

○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(☎055-392-8634)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. 끝.